

북한의 교정복지 관련 주요 내용의 이해

최 옥 채*

1. 서 론

햇볕정책으로 시작하여 '베를린 선언'(동아일보, 2000년 3월 10일자)으로 이어지는 김대중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통일부, 2000)은 북한의 모든 분야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 전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와 함께 사회복지의 각 분야에 관한 집중 연구를 게을리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최근 교정당국이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교정사업 현장에서는 교정복지에의 관심(조기룡:1999; 최옥채:1999)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즉 교정당국은 범죄인의 구급에 치중했던 과거의 답습을 버리고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범죄인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과 교정당국의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은 결국 북한의 교정복지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즉 지금의 사회정치적 분위기에 따른 사회복지 계는 교정복지 관련인들에게 북한의 비행과 범죄,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분·처벌 과정, 이들의 재활 프로그램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복지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문헌¹⁾을 살펴보면 대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북한의 실상(최일섭, 1990; 김연명, 1993; 김연명·김형식, 1995; 김병로, 1996; 정태신, 1997; 임재형, 1999) 혹은 사회복지 관련 주제(오정수, 1990)가 있었다. 또한 교정 관련 연구로는 북한의 사법제도(재성호,

* 전북대 사회복지학전공 조교수

1) 북한의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상세한 연구문헌은 정태신(1997)의 219쪽을 참고할 것.

1996; 이형규, 1997), 북한의 범죄(심영희, 1997)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 보면 북한의 사회복지 각 분야에 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정 관련 연구 자료는 여러 주제 혹은 영역으로 산재하고 있어 이들 자료의 체계적 통합화가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는 교정복지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 이 이해의 틀에 따라 문헌을 통해 북한의 교정복지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남한의 교정당국과 교정복지 관계인들이 통일 교정복지를 위해 대처해 나갈 방향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이해의 틀

남한과 북한의 정치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 주제에 관한 이해는 교정복지를 조망할 수 있는 일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이 틀이 산재해 있는 교정 관련 자료를 교정복지 관련 내용으로 체계화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교정복지의 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진 틀이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실상뿐 아니라 통일 교정복지를 위한 준거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틀은 신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적 시도로서 교정이념의 맥락과 교정사업(correctional services)의 맥락 그리고 교정사업실천 주체의 맥락으로부터 교정복지 관련 영역을 나누고, 이들 영역으로부터 틀을 구성하는 제 요소를 찾아 이를 근거로 교정복지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세 맥락에서 제 요소를 찾아야 하는 각각의 정당성과 각 맥락의 영역 그리고 구성 요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교정이념의 맥락

교정이념은 곧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의 재활 방향을 결정하는 정부의 신념 혹은 의지를 의미한다. 교정이념의 맥락에서 교정복지 이해의 틀을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야 하는 정당성과 맥락으로부터의 영역 그리고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당성

정부의 교정이념은 범죄인의 재활에 관여하는 일선 직원의 활동 철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이백철·양승은, 1995:64). 나아가 교정이념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교정사업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교정이념이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교정이념은 그 나라의 교정사업의 굵직한 방향을 결정짓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정복지 이해의 틀은 가장 먼저 교정당국이 추구하는 교정이념의 맥락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2) 영역

교정이념의 맥락에서 영역을 특별히 세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의 영역은 교정이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요소

교정이념의 영역 역시 교정이념이라는 요소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는 교정이념의 영역에 근거한 요소는 비행과 범죄에 대한 현재 정부의 정치적 노선을 비롯한 교정당국의 방침 이외에는 특별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교정이념은 크게 처벌주의, 억제주의, 재활주의(최옥채, 2000에서 재인용)로 구분하므로 이 중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특정 교정이념을 소개하면 된다.

2) 교정사업의 맥락

교정사업의 측면에서 교정복지 이해의 틀을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정당성과 구분이 가능한 영역 그리고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당성

교정사업은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관계하는 정부와 민간의 모든 개입을 일컫는다. 즉 비행청소년·범죄인의 수사·처벌·처우 과정에 관련하는 법(제도), 규정에 의한 절차, 범죄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총괄하여 교정사업(최옥채, 2000)이라 한다. 결국 교정복지는 광범위한 교정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범죄인·비행청소년의 재활에 개입한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에 관한 이해의 틀은 교정복지를 포함하는 교정사업의 범주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2) 영역

교정사업을 영역화 하면 교정정책과 교정행정 그리고 교정실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영역별로 교정복지는 고유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교정복지는 비행청소년·범죄인의 재활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교정행정과 교정정책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한다.

(3) 요소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교정사업의 영역을 교정정책, 교정행정, 교정실무로 구분할 때 교정정책의 영역에서는 비행청소년·범죄인의 처분·처벌과 처우에 관한 규정에 중점을, 교정행정에서는 비행청소년·범죄인을 다루는 기관·시설의 조직과 이들간의 관계 그리고 업무의 전달체계에 중점을, 교정실무에서는 비행청소년·범죄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교정사업의 맥락에서 교정복지 이해의 틀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정책의 영역에서 비행·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관련 제도(법)를 요소로 들 수 있다.

둘째, 교정행정의 영역에서 비행청소년·범죄인을 처분·처벌·처우하는 기관과 시설을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셋째, 교정실무의 영역에서 비행청소년·범죄인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서비스)을 들 수 있다.

3) 교정사업실천 주체의 맥락

교정사업실천은 교정이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정사업의 일부분, 특히 교정실무에 초점을 두고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가 비행청소년·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개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교정사업실천의 주체라 한다. 이 교정사업실천의 주체에 기반하여 교정복지 이해의 틀을 위한 요소를 찾아야 하는 정당성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성

교정사업실천의 과정은 교정사업에 관여하는 인력이 비행청소년·범죄인의 재활에 중점을 두고 개입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서비스를 받는 자의 욕구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으로 문제에 대한 사정 - 개입의 계획 - 계획의 실천 - 평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교정 서비스 제공자는 지역사회와의 합당한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함께 개입할 수 있

다. 결국 교정 서비스 전달자, 비행청소년·범죄인, 자원봉사자의 협력적 활동이 교정사업실천의 질과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복지는 교정사업실천의 주체를 바탕으로 이해되는 것이 당연하다.

(2) 영역

앞의 정당성에서 밝힌 바를 정리하면 주요 영역으로 교정 서비스 전달자와 서비스를 받는 자 그리고 민간 참여자로 세분할 수 있다.

(3) 요소

각 영역으로부터 교정복지 이해의 틀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 서비스 전달자는 곧 교정 관련 인력이다.

둘째, 서비스를 받는 자는 클라이언트로 할 수 있다.

셋째, 민간 참여자는 교정자원봉사자로 삼을 수 있다.

3. 북한의 교정복지 관련 주요 내용

북한의 교정복지 관련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정리한 교정복지 이해의 틀을 구성하는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면 된다. 즉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정복지 이해의 틀은 교정이념, 교정 관련 제도, 교정 관련 기관과 시설, 교정 프로그램, 교정 관련 주요 인력, 클라이언트, 교정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교정복지 이해의 틀을 구성하는 요소

맥 락	영 역	요 소
교정이념	교정이념	교정이념
교정사업	교정정책	교정 관련 제도
	교정행정	교정 관련 기관과 시설
	교정실무	교정 프로그램
교정사업의 주체	서비스 전달자	교정 관련 주요 인력
	서비스 받는자	클라이언트
	민간 참여자	교정자원봉사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7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의 교정복지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교정이념

교정이념을 처벌주의, 억제주의, 재활주의로 구분할 때 북한은 처벌주의와 억제주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북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그리고 범죄인의 처벌·처우과정에서 추측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주체사상을 적용하여 김정일 1인 독재정권의 유지(통일부 자료실, 2000:75), 3권분립을 무시한 수령-당-대중이라는 통치구조(유세희, 1997:33), 범죄인에 대한 처벌위주의 교정 관련 조직(이형규, 1997:116-120) 등을 강조함으로써 철저히 재활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한편 북한 범죄의 특징으로 체제에 반하는 정치범이 전체 범죄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심영희, 1997:133), 이들 범죄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처벌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으로 절도나 강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와 함께 부정·부패 등의 사회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통일부 자료실, 2000:421), 북한 당국은 이들 범죄인에 대해 구금과 사상학습에 역점을 들뿐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인력을 시설에 배치하고 있지 않아 억제주의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벌주의와 억제주의 입장은 북한 형법의 목적이 “주석을 보위하고 혁명노선을 옹호하며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함에 있다”(제성호, 1996:62)고 하는 구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2) 교정 관련 제도

북한은 처벌주의 혹은 억제주의 교정이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정이념 아래 펼쳐지는 교정 관련 제도는 범죄인에게 억압적이고 폐쇄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즉 북한에서 법의 주체는 주민이 아닌 노동당이며, 법의 본질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법이란 형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제성호, 1996:43)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에 대한 북한정권의 인권적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보호관찰제도와 같은 비구금제도(지역사회중심 교정 프로그램)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남한의 제도에서 볼 수 없는 교정 관련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현지재판제도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있는 제도로 균중을 각성시키며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현지재판을 열게 하고 있다. 즉 노동자나 농민의 대표가 범죄인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으며,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를 방관한 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교훈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형규, 1997:116).

(2) 재판준비회의제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바로 재판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준비회의 절차를 거친 후 재판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준비회의는 재판장, 인민참심원 2명, 검사로 구성하며, 이 회의에서 수사과정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이형규, 1997:116).

(3) 인민참심원제도

이 제도는 인민참심원이 1년에 14일동안 각급재판소에서 1심으로 재판하는 사건에 한하여 재판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참심원제도가 인민을 국가사업에 참여시킨다고 강조하나 노동당이 인민참심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당이 재판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제성호, 1996).

(4) 법무생활지도위원회제도

중앙인민위원회와 각급 인민위원회 산하의 협의체로 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해당지역내의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의 법무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검열위원회 혹은 검찰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주민의 법무생활을 감독·통제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하고 있다(이형규, 1997:121-122). 이 위원회는 각급 당책임 비서 겸 인민위원장, 사회안전부장, 인민위원회, 법무담당 부위원장 등 당해 지역의 지도급 인사 5-6명으로 구성하고 있다(제성호, 1996:81).

(5) 변호사제도

북한의 변호사는 '조선변호사회'의 직원에 불과하며, 사건 수임계약과 사건분담을 변호사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제도는 형식상으로 존재하며, 오직 당과 국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침투되도록 노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통일교육원, 1997:74). 한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

담, 조안, 해석 등 구두로 도움을 주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제성호, 1996:80).

3) 교정 관련 기관과 시설

북한의 주요 교정 관련 기관과 시설로 사회안전부, 검찰소, 재판소, 수용시설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과 시설을 몇 가지 문헌(제성호, 1996; 민족통일교육원, 1997; 심영희, 1997; 유세희, 1997:45; 이형규, 1997; 통일교육원, 1997; 통일부 자료실, 2000)을 토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사회안전부

사회안전부는 정무원(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33개 부서 중 하나였으나 최근 국방위원회 산하의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한다. 이 부서는 일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건설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반체제적 요소를 적발·제거하고 전인민을 김정일 유일체제 밑으로 동원하는 임무를 띤다. 특히 사회안전부는 각종 범죄단속은 물론 범죄인 수용시설인 교화소를 운영·관리한다.

사회안전부의 조직은 도에 사회안전국, 시군에 사회안전부, 각 리단위에 분재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급 기관에는 안전, 보안, 경비, 후방, 국토 등의 부부장급을 배치하고 있고, 각 분재소에 3-5명의 안전원이 근무하고 있다.

(2) 검찰소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 검찰소를 헌법기관으로 높여 일반감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소 조직은 재판소 조직체계에 대응하여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 특별검찰소인 군사검찰소, 철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권한은 중앙재판소에 있으며, 검사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공화국 주석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검찰소는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고, 재판감시권한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재판소와 협력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형벌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재판소

북한의 재판소 조직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군지역의 인민재판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 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에서 선출

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재판소를 감독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시(구역)·군의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시(구역)·군인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특히 재판은 제2심으로 종결하며 상고를 허용하지 않고, 인신구속과 압수, 수색 등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할 때 영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판소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사회안전원 등의 범죄사건을 관장하고,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4) 수용시설

북한의 범죄인 수용시설은 사회안전부 산하의 교화소, 교양소, 집결소가 있고,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의 정치범수용소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요 교정 관련 시설로는 교화소와 교양소를 들 수 있다. 이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을 수감하는 시설이 각각 교화소와 교양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용소는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들 정치범은 합당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들이 많아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

교화소는 남한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시설로 재판을 받은 일반 범죄인을 이들의 범죄 유형에 따라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강도와 절도사범은 함북 회령 교화소에, 여성범죄인은 평남 개천교화소에 수용하고 있다. 특히 범죄인 중 죄질이 나쁜 자들을 산간오지에 모아 각종 중노동에 임하게 하고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범죄인을 수용하는 노동교화소가 있다. 노동교화소의 규모는 약 4천 명을 수용할 정도이며, 수용대상에 따라 성인을 수용하는 노동수용소와 청소년을 수용하는 노동교양소로 구분하고 있다.

소년교양소는 남한의 소년원 수준으로 18세 미만의 학교생활불량자나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재판없이 수용하여 교양학습, 노동, 사상투쟁 등의 방법으로 6월간 교양 프로그램에 참여케 한 후 내보내는 곳으로 각도(직할시)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집결소는 유치장으로 각 시·군에 설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범죄 가담자나 6월 미만의 경범죄자를 수감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대체로 국가 적대에 관한 죄를 범한 자를 수감하며, 죄의 경중에 따라 혁명구역과 완전통제구역(중신수용소)으로 구분하고, 평양과 지방에 고루 설치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설치와 그 위치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유린의 장으로 세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4) 교정 프로그램

북한의 교정 프로그램은 교정 관련 제도와 교정 관련 기관·시설이 1인 그리고 1당을 위한 강압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볼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는 시설의 일과 내용에 불과한 프로그램을 각 수용시설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1) 교화소의 주요 프로그램

일반 범죄인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낡은 옷과 영양실조 그리고 구타로 장기수의 30-40%가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심영희, 1997:159). 수용자들은 매일 8-9시간씩 목표량이 부과된 중노동에 종사하며, 일과후에는 2시간씩 김정일 사상학습 등 의식개조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통일부 자료실, 2000:421).

(2) 소년교양소의 주요 프로그램

재판을 하지 않고 수용된 18세 미만 비행청소년들은 교양학습, 노동, 사상투쟁 등에 열중하고 있다(심영희, 1997:160). 특히 교양학습은 준법교양사업으로 국가주석의 명령, 법령, 정령 등을 원문 그대로 익히는 것이고, 사상투쟁은 낡은 사상적 잔재를 들춰 그 진상을 대중 앞에 공개하여 비난과 통제를 받게 하여 뇌우침과 사상적 충격을 받게 함을 의미한다(이형규, 1997:122-123).

(3) 정치범수용소의 주요 프로그램

정치범수용소 중 완전통제구역(중신수용소)의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개간지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수용소 내에서 죽는다. 이들 수용자에게 채광과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뿐이다(민족통일연구원, 1997:135).

한편 완전통제구역보다는 완화된 혁명화구역에는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 북송교포, 이들의 가족 등이 수용된다. 이들은 육체적 고통을 당한 뒤 사회에 복귀하여 김정일 체제에 절대 순응해야 한다(민족통일연구원, 1997:135-136).

정치범수용소의 수용자는 매일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 1시간 이상의 자아비판과 사상개조학습을 받아야 한다(통일교육원, 1997:252-253).

5) 교정 관련 주요 인력

교정 관련 주요 인력은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중심 교정 관련 기관의 직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교정 관련 주요 인력은 앞에서 살펴본 수용시설의 직원에 한정되어 있다. 수용시설의 교정 관련 인력은 사회안전부의 사회안전원과 인민경비대원, 국가안전보위부 직원을 들 수 있다.

(1) 사회안전원

남한의 경찰관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원은 사회안전부 산하 교화소, 소년교양소, 집결소의 수용자를 관리한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수용자의 구금확보와 철저한 감시 그리고 수용자들에 대한 물리적 통제라 할 수 있다.

(2) 인민경비대원

인민경비대원은 사회안전부 소속이나 정치사상범의 이송과 정치범수용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다(통일부 자료실, 2000:423).

(3) 국가안전보위부 직원

국가안전보위부 직원은 정치범수용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맡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국방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어 반당·반혁명사건을 진압하고 있다. 특히 1인지도체제를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독점수사권한을 갖는다(유세희, 1997:45). 따라서 이들 국가안전보위부원은 수용소의 정치범을 엄중 구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6) 클라이언트

교정 관련 클라이언트는 곧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을 일컫는다. 북한의 경우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실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청소년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체 범죄의 약 50%가 22-25세의 연령층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주로 교통이 번잡한 역 근처에서 3-4명씩 짝을 지어 소매치기, 상점 약탈, 패싸움 등을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난하는 낙서를 하기도 한다(심영희, 1997:143).

한편 일탈청소년들은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원산, 함흥, 남포 등의 항구도시에서 50-60명의 폭력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어 비행·범죄청소년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심영희, 1997:143에서 재인용). 이들의 비행 혹은 범죄는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89년 평양축전 이후 외부사조의 유입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변화에 근본적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일부 자료실, 2000:421)

(2) 성인

북한의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유형은 6가지(반국가범죄,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대부분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국가와 체제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심영희, 1997:132-133).

북한의 정치사범은 대부분 재판 없이 감금되거나 처형되므로 정확한 수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96년 현재 약 20만 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1인체제에 불만 세력을 검거하여 정신질환자로 간주하여 130-140개 보양소에 50-100명씩 격리수용하고 있다(심영희, 1997의 재인용).

한편 북한의 경제난 심화에 따른 생계형 범죄는 단순절도뿐 아니라 여성의 매춘행위도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물자부족으로 인한 횡령, 착복, 배임 등과 대민 업무에서 뇌물수수가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통일부 자료실, 2000:421). 이외에도 폭행, 강간, 간통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폭행사건은 주로 돌격대간에 많이 일어나며, 성범죄는 주로 당 혹은 행정기관의 간부들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심영희, 1997의 재인용).

7) 교정자원봉사자

교정자원봉사자는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의 재활과 비행·범죄의 예방을 위해 교정당국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일컫는다. 또한 이들 교정자원봉사자는 교정 관련 기관의 공식 조직의 성원이라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교정자원봉사자를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심영희(1997:144의 재인용)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청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계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청소년의 비행 혹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부모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4. 제 언

교정복지의 개념에 근거하여 교정복지 이해의 틀을 구성하는 7개 요소를 제시하고,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의 교정복지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물론 교정복지 이해의 틀을 구성하는 7개 요소에 대한 연구는 보완되어야 하고, 제한된 문헌을 통해 정리한 북한의 교정복지 관련 주요 내용도 부족한 점이 많아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보다 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교정복지 관련 주요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1) 후속연구를 위하여

교정복지의 내용은 형사정책이 포괄하는 교정 관련 제도, 비행·범죄의 실상, 교정현장의 실상, 교정실무의 현황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명봉(2000:103)이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형사 관련법에 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북한의 교정복지 관련 내용을 연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가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탈북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몇 사람의 탈북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보다는 탈북자 모집단을 토대로 이들의 특성에 따라 교정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 객관적인 북한의 실상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 교정복지를 위하여

북한은 철저히 1인의 독재정치체제를 고수하기 때문에 이하 교정이념과 교정사업이 자유 사회에서 원하는 교정복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1당 정치체제를 위한 교정이념이 비인간적 교정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 교정정책은 이하 폐쇄적인 교정행정과 처벌위주의 교정실무를 강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제 환경에서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합당한 재화를 말살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이런 상황을 남한의 교정복지 관련인들이 방관한다면 이현재(1994)가 밝힌 통일후유증이 교정복지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남북한의 통일은 당위의 영역에서 가능성의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다(이종석, 2000). 이런 정치사회적 흐름에서 남한의 교정당국을 비롯하여 교정복지 관련 연구자들이 북한의 교정복지 실상을 국내외적으로 알려 북한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 나아가 통일 교정복지를 준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의 공동연구가 절실하다.

참고문헌

- “김대통령 ‘베를린 선언’.” 《동아일보》. 2000.3.10. p. A3.
- 김병로. 1996. “V. 북한의 사회, 복지.” 《북한의 이해》 서울: 집문당.
- 김연명. 1993.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남북한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명·김형식. 1995. “제1장: 통일국가의 사회복지.”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서울: 한겨레신문사.
- 민족통일교육원. 1997. 《북한 인권백서》.
- 심영희. 1997. “제4장 범죄와 사회통제.”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오정수. 1990.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북한 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 유세희. 1997. “제1장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이백철·양승은. 1995. 《교정교육학》 서울: 시사법률.
- 이종석. 2000.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 이현재. 1994. “발간사”.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형규. 1997. “제3장 법제도와 운용.”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임재형. 1999.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 《북한연구》 서울: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 장명봉. 2000. “제4장 북한법 연구.”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 정태신. 1997. “제6장 통일시대의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방향.” 《통일시대의 사회발전과제》 광주: 광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제성호. 1996. “II. 북한의 법체계와 사법제도.” 《북한의 이해》 서울: 집문당.
- 조기룡. 1999. “재통합모델에 기초한 교정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최옥채. 1999. “교정복지운동론.” 《교정연구》 서울: 한국교정학회.
- 최옥채. 2000. 《교정복지론》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최일섭. 1990. “사회복지 제도와 운영 실태.” 《북한 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통일교육원. 1997. 《북한 이해》.

통일부. 2000. 《알기쉬운 북한》.

통일부 자료실. 2000. 《북한 개요》.